



II. [학교용] 현장실습 학기제

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운영 기간 및 시간 기준 요약

구분	기준
실습기관 근무제 형태	■ 1주 5일 기준 - 주당 근무제 형태가 1주 4일, 6일인 경우 운영 가능 ※ 주당 근무제 형태가 1주 4일 미만이거나, 주당 근무제 형태와 달리 학교에서 임의 변경 시 운영 불가 (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)
실습기관 전일제 형태	■ 1일 8시간(휴게시간 제외) 기준 - 전일제 형태가 1일 6시간 이상 8시간 미만인 경우 운영 가능 ※ 전일제 형태가 1일 6시간 미만이거나, 전일제 형태와 달리 학교에서 임의 변경 시 운영 불가 (자율 현장실습학기제로 운영)
정규 실습시간	■ 1주 40시간 기준 - 1주 40시간 기준 내에서 근무제 및 전일제 형태 기준을 충족할 경우 운영 가능
연장 실습시간	■ 1주 최대 5시간 한도 기준 - 계획 시점부터 연장실습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가 필요하며, 필요한 상황에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운영 ※ 1주 최대 5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적인 계약체결 형태로 운영
야간실습	■ 당일 오후 10시부터 이튿날 오전 6시까지 운영 불가 - 다만, 실습기관의 전일제 형태 기준이 야간 시간에 해당할 경우에만 운영 가능(학생의 사전 인지 및 확인 필요)
실습기간	■ 학교별 학기(수업일수) 기간 동안 편성 운영 - 학교별 학칙으로 정한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위 기준에 따른 주 또는 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을 편성하여 운영 - 최소기준 : 1개월 이상으로 편성하여 운영 - 권장기준 : 학기별 수업일수 기간 동안 개월 단위의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간 편성, 운영